

□ 주제별 출제빈도

분야	기초이론	정책학	조직이론	인사행정	재무행정	지방행정	행정환류	총계
문항 수	5	3	5	4	4	4	0	25
빈도	20%	12%	20%	16%	16%	16%	0%	100%

□ 총평

한 마디로 지난 해에 비해 너무 쉬운 출제였습니다.

어차피 자격시험이니 수험생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출제자가 애를 많이 쓴 흔적이 드러납니다.

문제 9번(그림노트 정책평가편 확인)을 제외하면 출제 수준은 무난하고 무난해서 평가를 하기가 쑥스러울 정도입니다. 문제의 세련도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전보다 떨어지는 수준으로 보이는군요. 문제 1번과 2번, 8번, 13번, 18번, 24번은 전형적인 개념 확인, 주소 확인형 문제이지요. 문제 3번과 4번, 6번과 7번, 10번, 11번, 12번, 14번, 15번, 16번, 17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은 내용연결형으로 역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그나마 문제 3번(매트릭스조직) 정도가 약간의 고민을 가져다주지 않았을까 생각되는군요. 문제 5번은 사례형이지만 보기 내용에서 아주 많은 힌트(존중, 위로, 지적인 자극, 비전 제시 등....)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해결하였으리라 여겨 집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문제 25번입니다. 출제자가 좀 더 객관적으로 법령을 살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차는 끝났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남은 2차 시험에 건투를 빕니다.

이권 드림

1. 발전목표의 설정과 달성을 통해 국가발전을 추진하던 1960년대 발전 행정적 사고가 지배적일 때 부각되어 중요시되었던 행정가치는?

- ① 능률성
- ② 효과성
- ③ 합법성
- ④ 사회적 효율성
- ⑤ 법적 책임성

[정답] ②

[해설] 발전행정은 절대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목표를 정해놓고 그 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목표달성도, 즉 효과성을 강조한다.

2.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이 중요시하여 추구하였던 것은?

- ① 행정의 탈정치화

- ② 가치와 사실의 분리
- ③ 논리실증주의
- ④ 절약과 능률
- ⑤ 현실적합성

[정답] ⑤

[해설] 1060년대 말 신행정학은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였다. 행태주의의 현실적합성 없는 이론에 대한 반발이 신행정학의 핵심 테마이다. 행정이 현실적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정치화, 가치와 사실의 통합, 빈실증주의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하였다. ④의 절약과 능률은 고전행정학의 특징이다.

3. 매트릭스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단일한 명령 및 보고체제를 갖고 있다.
- ② 하위조직 간 정보 흐름이 활성화된다.
- ③ 하위조직 간 할거주의가 발생할 경우 조정이 용이하다.
- ④ 불안정한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 ⑤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

[정답] ②

[해설] 매트릭스조직은 기능구조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으나 통합과 조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 사업구조는 전문요원의 통합적 활용은 가능하나 비용이 중복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양자의 장점을 채택하고 단점을 극복한 조직형태이다. 잦은 대면접촉과 회의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하위조직 간 정보 흐름이 활성화되므로 예기치 못한 문제 발견과 새로운 해결책 강구하는데 기여한다. ① 기능구조와 사업구조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중적 명령권한체제를 갖고 있다. ③ 이질적인 조직구성원들로 인하여 하위조직 간 할거주의가 발생할 경우 조정이 어렵게 된다. ④ 조직의 환경이 복잡하고 불확실할 때 적합한 구조이다. ⑤ 다양한 경험을 가진 내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므로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하다.

4.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평구조는 수직적 계층과 부서 간 경계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든 유기적 구조이다.
- ② 네트워크조직은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 단위나 조직들 간에 협력적 연계장치로 구성된 조직으로 조직행위자 간 상호의존성과 관계성이 중요시된다.
- ③ 사업구조는 특정 산출물별로 운영되므로 고객만족도 제고 및 성과관리에 유리하다.
- ④ 기계적 구조는 조직의 외부환경이 안정적일 때 채택되며, 의사결정 집권화, 규칙과 절차 준수, 명확한 업무구분이 특징이다.
- ⑤ 학습조직은 시행착오나 실패를 두려워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나 실패의 제로(zero)를 추구한다.

[정답] ⑤

[해설] 학습조직은 시행착오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행착오나 실패를 통하여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 다음 대화에서 요구되는 과장의 리더십은?

국회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 ○○부 ○○과의 국정감사 수감 결산 간담회가 열렸다. A과장이 다른 업무로 불참한 상황에서 직속 상급자인 A과장의 리더십에 대해 과원들의 의견이 표출되었다.

B과원: “과장님이 부하직원들을 좀 더 존중하고 배려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심한 몸살로 고생하며 근무했는데도 과장님이 한마디 위로도 안하셔서 서운했습니다.”

C과원: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지적인 자극을 주시면 좋을 텐데...”

D과원: “무엇보다도 과장님이 우리 과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공유하여 성취하도록 지도하시어 더욱 발전하였으면 합니다.”

- ① 번스(Burns)와 바스(Bass)의 변혁적 리더십
- ② 블레이크(Blake)와 머튼(Mouton)의 관리망 이론 리더십
- ③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응적 리더십
- ④ 허쉬(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의 삼차원적 리더십
- ⑤ 유클(Yukl)의 다중연결모형 리더십

[정답] ①

[해설] 제시된 보기는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요구이다. B과원은 개별적 관심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섬김의 리더십을, C과원은 형식적 관행을 타파하고 구성원에게 지적 도전의 계기를 부여하는 촉매적 리더십을, D과원은 미래에 대한 구상인 비전제시를 잘하는 영감적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리더십을 포괄하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이다.

□ 변혁적 리더십(Bass)

- **카리스마적(위광적) 리더십** : 리더가 난관을 극복하고 현재 상태에 대한 각성을 확고하게 표명하고 수범을 보임으로써 부하들에게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줌
- **영감적 리더십(inspirational leadership)** :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도전적 목표와 임무, 비전(미래에 대한 구상)을 받아들이고 추구하도록 격려.
- **지적 자극** :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행을 타파하고 창조적 사고와 학습의지,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키는 지적 자극 부여(촉매적 리더십)
- **개별적 배려** :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적합하게 고려하고 개인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며,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코치하고 충고함(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6. 특별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산집행부서의 재량을 억제하여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 ② 예산단일의 원칙을 준수하는 데 유리하다.
- ③ 특별회계는 행정각부의 명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④ 예산통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⑤ 예산제도가 단순해지므로 국가 재정의 통합적 관리에 유리하다.

[정답] ④

[해설] 특별회계는 예산통일성과 단일성원칙의 예외이다. ① 특별회계는 예산집행부서의 재량을 인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지향하며, ② 예산단일의 원칙의 예외이며, ③ 특별회계는 법률로 설치하며, ⑤ 예산제도가 복잡해지므로 국가 재정의 통합적 관리에 불리하다.

□ 특별회계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기업적 성격의 사업의 수지 명확화 : 경영성과 명확화 • 재량권의 인정으로 경영의 합리화 추구 • 행정기능의 전문·다양화에 부응	• 예산구조와 체계의 복잡화 • 일반회계와의 교류로 인한 중복발생으로 국가재정의 전체적인 관련성 불분명 • 고도의 자율성 인정으로 입법부의 예산통제·민주통제의 곤란 • 목적세와 함께 재정팽창의 원인이 된다는 점

7.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때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1960년도 이후부터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준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의 제1공화국 때는 가예산제도를 사용했다.
 ④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은 잠정예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⑤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실제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

[정답] ②

[해설] 준예산제도는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8.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산원칙은?

국가재정법 제17조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① 예상총계주의 원칙
 ②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③ 예산통일의 원칙
 ④ 예산한정성의 원칙
 ⑤ 예산공개의 원칙

[정답] ①

[해설] 제시된 보기의 내용은 예산완전성(포괄성)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예산총계주의라고도 한다.

9. 정책평가의 절차 중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 ①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② 인과모형의 설정
- ③ 대상 및 기준의 설정
- ④ 평가결과의 환류
- ⑤ 정책목표의 확인

[정답] ④

[해설] 나크미아스(Nachmias, 1979)에 따르면, 정책평가는 ⑤ 정책목표의 확인 → ③ 대상 및 기준의 설정 → ② 인과모형의 설정 → ①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④ 평가결과의 환류의 순서로 진행된다.

□ 정책평가의 절차(Nachmias, 1979)

목표의 인식	당면목표, 중간목표, 궁극목표로 구분하여 파악하되, 평가자가 관련당사자에게 목표와 관련되는 진술을 제시하고, 관련당사자들은 이를 수정하여 다시 평가자에게 돌려보내는 과정을 계속하여 양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되풀이 하는 방법(델파이기법)을 통해 확인할 것
인과모형의 구성	인과모형은 i) 연구대상이 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고, ii)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iii) 변수관계의 성격에 관한 명제(가설)의 설정으로 이루어 짐
조사 설계의 개발	조사설계는 자료의 수집·측정·분석·해석의 과정을 거쳐 모형을 구성하는 작업이며, 대표적으로 진실검과 준실험 설계가 있음
측정과 표준화	이는 평가연구에서 정책영향과 영향(인과)모형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것.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정책의 영향, 정책변수들을 식별하여 조작하고,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측정하는 것
자료 수집	자료는 i) 면접, ii) 설문조사, iii) 관찰, iv) 각종 문헌과 정부자료 등을 통해 수집함
분석과 해석	사회학이나 정치학 분야는 상관관계분석을 주로 사용하지만, 정책평가에서는 변화, 예측, 인과성이 주요 관심사이므로 회귀분석이 효과적임

10.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에치오니(Etzioni)는 규범적이지만 비현실적인 합리모형과 현실적이지만 보수적인 점증모형을 절충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 ② 사이몬(Simon)은 결정자의 인지능력의 한계, 상황의 불확실성 및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제한적 합리성 하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 ③ 합리모형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정치적 합리성이다.
- ④ 쓰레기통모형에서 가정하는 상황은 불확실성과 혼란이 심한 상태이다.
- ⑤ 점증모형은 실제의 결정상황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이다.

[정답] ③

[해설] 합리모형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경제적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이다. 정치적 합리성은 점증모형의 특징이다.

11. 콥과 로스(Cobb & Ross)가 제시한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부주도형은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 ② 내부접근형은 고위 의사결정자 등에 의해 정부의제가 먼저 설정되고 정책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유형이다.
- ③ 외부주도형은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이 사회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며 정부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 ④ 내부접근형은 국방, 외교 등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정책, 또는 강한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하려는 정책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 ⑤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나, 선진국에서도 정치지도자가 특정한 사회문제해결을 주도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정답] ②

[해설] ②는 동원형에 대한 설명이다.

12. 다음에서 설명하는 부패의 종류는?

- ㄱ. 부패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나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례화된 부패로서 사회 체제에 심각한 파괴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ㄴ.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이 공무원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안정 등과 같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한다.

- ① 백색부패
- ② 일탈형 부패
- ③ 흑색부패
- ④ 제도화된 부패
- ⑤ 회색부패

[정답] ①

[해설]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백색부패이다.

□ 흑색·회색·백색부패

유 형	현재적 위험성	잠재적 위험성	처벌 여부
흑색부패 ¹⁾	O	O	O
회색부패 ²⁾	X	O	△
백색부패 ³⁾	X	X	X

¹⁾ 사회체제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로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부패

²⁾ 사회체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부패로서 사회구성원 가운데 일부집단을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집단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

- 3) 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거나 관료사익을 추구하려는 기도가 없는 선의의 부패로서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관료화된 부패(미풍양속형부패, 외환위기는 없다는 식의 선의의 거짓말, 출퇴근카드 허위체크 등)

13. 입법기관이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정부의 사업 또는 조직이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 또는 폐기되도록 하는 제도는?

- ① 감축관리제
- ② 일출제
- ③ 목표관리제
- ④ 영기준예산제
- ⑤ 일몰제

[정답] ⑤

[해설] 설문은 일몰법을 설명하고 있다.

14. 다음에서 설명하는 피터스(Peters)의 거버넌스 정부개혁모형은?

정부관료제가 공공봉사 의지를 지닌 대규모의 헌신적인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정부의 내부규제가 제거되거나 축소되면 정부관료제가 훨씬 역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 ① 시장 모형(market model)
- ② 참여 모형(participatory model)
- ③ 유연 모형(flexible model)
- ④ 저통제 모형(deregulation model)
- ⑤ 기업가적 모형(entrepreneurial model)

[정답] ④

[해설] 보기 내용은 저통제(탈규제)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 G. Peters의 규제완화형(저통제) 정부운영 모형(deregulated government model)

의 의	정부축소와 통제라는 80년대 이후의 흐름과는 상반된 모형. 구조보다는 절차문제에 초점
가 정	- 공공부문에 내재해 있는 잠재력을 통해 더 나은 정부활동이 가능하므로 많은 내부규제를 제거할 경우 정부는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시장모형처럼 내부통제의 제거를 통해 관리자리의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참여모형처럼 재량이 규칙·규제보다 성과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옴.
이 념	중앙-지방간 관계에서의 규제완화. 그러나 탈규제모형을 적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오류는 불가피함.
구 조	전통적인 계층제 구조에 좀 더 친화적.
관 리	- 전통적인 관리구조와 형태는 수용 가능한 것이며,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음. 여기서의 관리자의 리더십은 시장모형에서 요구하는 기업가뿐만 아니라 참여모형에서 제시하는 민주적 지도자의 자격도 구비할 것을 요구. - 참여모형에서처럼, 정부의 창조적인 힘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고위직 관리자와 그 외에 모든 계층의 관리자들이 참여하여야 함. 이 점은 구성원의 참여에 비중을 두지 않는 시장모형과 상반.

정책 결정	주로 의사결정 및 법 집행 '절차'에 관심 많음. 특히 정책결정에서 관료조직에게 많은 분권이 이루어질 것.
공 익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 수단으로 전통적인 규제 대신에 다른 형태의 통제(예, 촉매적 통제)로 대체 • 그래서 공공부문이 적극적이고 개입주의적일 때 공익이 더 잘 달성될 수 있음. • 집합적 행동은 문제이기 보다는 해결책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의 문제는 집합적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고, 이를 위해 관료제가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동을 통해 공헌할 것을 요구.

15.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대신 성과에 대한 책임이 요구된다.
- ②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는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경찰병원 등이 있다.
- ③ 책임운영기관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여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다.
- ⑤ 사업적, 집행적 성격의 행정서비스 비율이 높은 사무에 적합하다.

[정답] ③과 ④

[해설] ③ 책임운영기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법 제27조에 따르면,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를 주로 하는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두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을 제외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한다. 한편 ④ 책임운영기관은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나뉘며, 기관장을 공모를 통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이다.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복수 정답이다.

□ 관련조문

-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맞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1.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
 2.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
-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사무를 주로 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속책임운영기관(이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준하는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6.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이 아닌 것은?

- ① 상상(imagination)
- ②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
- ③ 은유(metaphor)
- ④ 과학주의(scientism)

⑤ 해체(deconstruction)

[정답] ④

[해설] ④는 모더니즘의 특징이다.

17.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행정, 질 높은 대민서비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실천적인 수단이다.
- ㄴ. 우리나라 전자정부시스템에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이 있다.
- ㄷ. 스마트워크센터는 출장지 등 원격지에서 업무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기반의 원격업무시스템을 갖춘 사무공간을 말한다.
- ㄹ. 행정기관 등의 장은 원격지 간 업무수행을 할 때에는 온라인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보기 내용은 모두 옳다.

18.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용과 편익의 괴리
- ② 외부효과의 발생
- ③ 공공재의 존재
- ④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 ⑤ 독과점의 출현

[정답] ①

[해설] ① 비용과 편익의 괴리는 정부실패요인이다.

19.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표관료제는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강화한다.

- ② 대표관료제의 발전은 행정의 형평성과 능률성을 제고한다.
- ③ 대표관료제는 공직사회 내부 구성원 상호 간 견제를 통하여 내적 통제를 강화한다.
- ④ 대표관료제의 관료들은 정책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배경집단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한다.
- ⑤ 집단보다는 개인에 역점을 두는 대표관료제는 자유주의와 부합한다.

[정답] ③

[해설] 대표관료제는 행정의 복잡화·전문화로 외부통제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를 내부통제로 전환하고자 한다. ① 대표관료제는 정치적·집단적 임용방식이고 능력에 따른 임용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약화시킨다. ② 대표관료제의 발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으므로 행정의 형평성(특히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는 기여하지만, 능력에 따른 임용이 아니므로 능률성을 제고하지는 못한다. ④ 대표관료제의 관료들은 자기 출신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라는 취지로 운영하므로 공익보다는 정책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배경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 ⑤ 개인별 임용보다는 집단적 임용이므로 능력 있는 자를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자유주의원칙과 충돌한다.

20.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직무에 대한 동일한 보수 지급의 원칙에 부합한다.
- ② 직무의 내용, 특성, 자격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 ③ 조직 내에서 부서 간 협조와 교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 ④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중시하는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에 유용하다.
- ⑤ 동일 직렬에 장기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정답] ④

[해설]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중시하는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에 유용한 것은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의 장점이다.

21. 우리나라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 신분보장, 복무 등에 있어서 개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ㄴ.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 ㄷ.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ㄹ.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ㅁ.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등 주로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ㅂ.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
|--|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ㄱ
 ⑤ ㄷ, ㄹ, ㄹ

[정답] ②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지만 후자는 이를 배제한다. 우리나라는 일반직과 특정직이 경력직으로, 정무직과 별정직이 특수경력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ㄱ.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 신분보장, 복무 등에 있어서 개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이다. ㄴ.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별정직이다. ㄷ.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일반직이다. ㄹ.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정무직이고, ㄱ.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등 주로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정무직이다. ㄴ.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은 경력직이다.

2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④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 도의 조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보다 확대, 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례와 규칙

구 분	조 례	규 칙
제정 주체	지방의회(자치단체)	단체장
규정 사무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	자치사무 + 단체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
제정 범위	법령범위 내	법령 + 시·도 조례/규칙 범위 내
벌칙 규정 여부	○(법령의 위임)	×

23.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간접경영방식이다.
- ③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예산의 심의, 확정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 ④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①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직영기업은 직접경영방식이고, 공사공단은 간접경영방식이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고(법 제13조), 이는 예산이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법 제26조). ④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법 제6조). ⑤ 지방공기업법은 제2조에서 제48조까지 자세한 규정을 두고 지방직영기업의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 지방공기업법 관련 조문

-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방자치법 등의 적용)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 제7조(관리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 제26조(예산안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처분)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4.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중앙정부의 사무로 처리해야 한다’와 관련된 사무배분 원칙은?

- ① 포괄성의 원칙
- ② 종합성의 원칙
- ③ 지역성의 원칙
- ④ 가외성의 원칙
- ⑤ 보충성의 원칙

[정답] ⑤

[해설] 제시된 설문은 보충성의 원칙을 묻고 있다.

□ 보충성 원칙

소극적 보충성 원칙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기능은 상급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에, 기초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광역에, 광역도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배분하여야 한다는 것.
적극적 보충성 원칙	상급 정부는 기초자치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 즉, 개인 및 지역 간의 과도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급 공동체는 필요한 최소 수준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개인 및 지역의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

25. 지방자치법상 명시된 주민직접참여제도로 바르게 묶인 것은?

- ① 주민투표, 주민감사, 주민발안
- ② 주민발안, 주민총회, 주민감사청구
- ③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 ④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총회
- ⑤ 주민감사, 주민소송, 주민총회

[정답] ① 또는 ③

[해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 제 14조에서, 주민감사는 법 제 16조에서, 주민발안(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은 법 제15조에서, 주민소환은 법 제20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주민발안은 직접발안이 아니라 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간접발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직접 참여'방식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출제하였다면 정답은 ③이어야 한다. 그러나 단체장에게 청구할 권리를 주민에게 직접 허용한 것이므로 비록 간접발안형식이지만 직접참여제도로 본다면 정답은 ①도 가능하다.

□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

- **제14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7조(주민소송)**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